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특수계약조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에 관한 내용이며, 본 특수조건은 "수유마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제1조 (처리의 위탁범위)

1. 수유마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적용하며, 본 공사(용역)의 설계물량은 추정물량으로서 처리 송장 및 계근표에 의거 정산하고 물량의 증·감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기타 "강북구청"이 처리 요구하는 폐기물 일체

제2조 (계약기간)

1.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년 12월 30까지로 한다.

제3조 (처리방법 등)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처리하되 "강북구청" 또는 공사시공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차질 없이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위 공사(용역)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알려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시에는 폐기물과 토사가 혼합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리·수집·운반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계근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현장감독 미확인 반출량은 처리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사토장 또는 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운반·처리되는 폐재류를 성상별로 처리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행한 작업일지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폐기물 반출 간이 인계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 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된 아스콘, 콘크리트 등 폐기물에 대하여 계약된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재생 처리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기간 중에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 하여야 하며, "강북구청"이 추가로 「임시폐기물 운반차량」을 배차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관리사항을 준수하고 소속 작업자의 안전관리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제반 비용과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0. 폐기물 처리수량 산출 및 정산 시 콘크리트 건설폐기물 단위중량은 2.3 tonf/m³, 아스팔트 건설폐기물은 2.35 tonf/m³, 혼합건설폐기물 단위 중량은 1.6 tonf/m³로 한다.
11. 폐기물 처리 운반거리가 설계상 거리(L=21km)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거리로 정산처리할 수 있다.
12.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13. 수유마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급인이 제공하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상차 작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차량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4. 폐기물 발생으로 운반차량 배차 요구 시 소요차량을 폐기물상차에 지장이 없도록 배차하여야 하며 배차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대당 1일 평균 3회 운반기준이며, 1일 최대 차량 투입 대수는 운반업체 가용차량을 타작업장에 비해 우선 배차 조건)

제4조 (대금 지급방법)

1. 기성청구는 작업 이행된 물량(계근표 확인수량)에 대하여 도급자가 필요 시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강북구청"은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폐기물 간이 인계서 등)한 후 사업별로 각각 정산 준공 조치하고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 (용역수행의 성실)

1. "계약상대자"는 "강북구청"이 제1조에 위탁한 폐기물처리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강북구청"의 일시적 사정에 의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양도 등)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에서 타 업체에 재위탁 처리 할 수 없으며, 위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강북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기 타)

1. 본 공사(용역)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강북구청이 별도 지침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에 맞게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 관련법규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른다.